



의안번호	제 2012 - 6 호
의 결 연 월 일	2012. 1. 30. (제39차 회의)

의
결
안
건

양형기준안에 관한 제5차
공청회 개최계획안 수정 및
제6차 공청회 개최계획안
확정의 건

제 출 자	운영지원단장
-------	--------



1. 의결주문

의안번호 제2011-27호 「양형기준안에 관한 제5차 공청회 개최 계획안」을 별지1과 같이 수정하고, 「양형기준안에 관한 제6차 공청회 개최계획안」을 별지2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양형위원회는 2011. 12. 19. 위원회 제38차 회의에서 공청회 개최계획에 관한 기본사항을 정한 「양형기준안에 관한 제5차 공청회 개최계획안」을 의결하고 운영지원단으로 하여금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였음

하지만 위 계획안은 양형기준안에 대한 국민의 다양한 여론을 폭 넓게 수렴하고자 하는 공청회 개최 취지를 살리기에는 미흡한 점이 있어 생생한 국민의 목소리를 현장에서 직접 들을 수 있도록 공청회 장소를 법원이 아닌 외부 장소로 하고, 공청회 대상범죄도 당초 4개에서 2개로 줄여 「증권·금융, 지식재산권범죄」에 한하여 제5차 공청회를 개최함으로써 공청회 절차를 내실화할 수 있도록 공청회 방식과 개최 장소를 수정하려는 것임

더불어 당초의 4개 범죄 중 제5차 공청회 대상 2개 범죄를 제외한 나머지 「폭력, 교통범죄」에 관해서 제6차 공청회 개최계획안을 추가로 의결하여 운영지원단으로 하여금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및 참고사항

별지1 설명자료와 같음

【별지1】

양형기준안에 관한 제5차 공청회 개최계획안

I 목적

- 양형기준안에 대한 일반 국민 및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그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함으로써, 위원회의 양형기준 심의·의결 과정에 폭넓은 참고자료를 제공
- 양형기준 설정을 투명하고 공개적인 절차에 따라 진행함으로써 양형기준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제고

II 공청회 일시·장소

- 일시 : 2012. 3. 12. (월) 14:00 ~ 17:30
- 장소 : 한국거래소(KRX) 1층 국제회의장

III 공청회 참석자

A 공청회 사회자

- 상임위원

B 양형기준안 발표자

- 수석전문위원

C 지정토론자

- 현직 법관이나 검사는 가급적 지양하고, 대상범죄에 관한 전문적 식견과 관심이 있는 유관기관 간부, 변호사, 교수, 시민사회단체 간부 각 1인씩으로 구성
- 지정토론자의 수 : 4인

IV 공청회 일정

- 개회 선언
- 양형기준안 발표
- 지정토론
- 방청객 질의
- 폐회

V 토론 주제

A 대상 기준안

- 2012. 1. 30. 위원회 제39차 회의에서 확정된 증권·금융범죄, 지식재산권범죄 양형기준안

B 토론 쟁점

- 개별 양형기준안의 유형분류 또는 형량범위의 적정성
- 구체적 양형과정에서 고려 또는 배제해야 할 양형인자
- 기타 양형기준 설정 시 참고할 사항

【별지2】

양형기준안에 관한 제6차 공청회 개최계획안

I. 목적

- 양형기준안에 대한 일반 국민 및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그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함으로써, 위원회의 양형기준 심의·의결 과정에 폭넓은 참고자료를 제공
- 양형기준 설정을 투명하고 공개적인 절차에 따라 진행함으로써 양형기준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제고

II. 공청회 일시·장소

- 일시 : 2012. 3. 26. (월) 14:00 ~ 17:30
- 장소 : 미정

III. 공청회 참석자

A. 공청회 사회자

- 상임위원

B. 양형기준안 발표자

- 수석전문위원

C. 지정토론자

- 현직 법관이나 검사는 가급적 지양하고, 대상범죄에 관한 전문적 식견과 관심이 있는 유관기관 간부, 변호사, 교수, 시민사회단체 간부 각 1인씩으로 구성
- 지정토론자의 수 : 4인

IV. 공청회 일정

- 개회 선언
- 양형기준안 발표
- 지정토론
- 방청객 질의
- 폐회

V. 토론 주제

A. 대상 기준안

- 2012. 1. 30. 위원회 제39차 회의에서 확정된 폭력범죄, 교통범죄 양형기준안

B. 토론 쟁점

- 개별 양형기준안의 유형분류 또는 형량범위의 적정성
- 구체적 양형과정에서 고려 또는 배제해야 할 양형인자
- 기타 양형기준 설정 시 참고할 사항

양형위원회 제39차 회의

양형기준안에 관한 제5, 6차 공청회 개최계획 설명자료

2012. 1. 30.

양형위원회 운영지원단장

목 차

I. 개최 배경	1
II. 개최의 목적 및 근거	2
1. 개최 목적	2
2. 개최 근거	2
III. 공청회 일시 · 장소	2
1. 일시	2
2. 장소	3
IV. 공청회 참석자	3
1. 진행 관련	3
2. 양형기준안 발표자	3
3. 지정토론자	3
V. 공청회 진행(안)	4
1. 진행 순서	4
2. 토론 주제	5
3. 발표 및 토론 방식	5
4. 기타 사항	5

VI. 공청회 결과 보고	6
VII. 준비사항 및 홍보 방안	6
1. 준비사항	6
2. 홍보 방안	6



I. 개최 배경

- 위원회는 제35차 회의(2011. 6. 14.)에서 ‘제3기 양형기준 설정 대상범죄 선정의 건’을 의결하고 그에 따라 개별범죄에 대한 구체적인 양형기준안 작성을 진행 중임

◆ 양형기준 설정 절차 ◆

단 계		담당	내 용
1	양형기준 초안 작성	전문위원	전문위원단은 위원회에서 결정된 바에 따라 양형기준 초안을 작성하여 위원회에 안건으로 상정
↓			
2	양형기준안 심의	위원회 소위원회	위원회는 양형기준 초안을 심의하여 양형기준안을 마련
↓			
3	공청회 의견수렴	위원회	위원회는 양형기준안에 대하여 공청회를 개최하고, 법원과 관계 국가기관 등에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의견조회
↓			
4	양형기준안 수정	위원회 소위원회	위원회는 위와 같은 절차를 거친 후 그 결과를 반영하여 양형기준안을 수정 위원회는 양형기준 의결 이전에 양형기준의 적용효과를 고려
↓			
5	양형기준안 확정 및 공개	위원회	위원회에서 양형기준이 최종 의결되면 1개월 이내에 관보에 게재

II. 개최의 목적 및 근거

1. 개최 목적

- 양형기준에 일반 국민의 건전한 법감정과 상식을 반영
 - 양형기준안에 대한 내용 소개 및 의견수렴을 통해 양형기준안에 관한 일반 국민의 이해를 증진하고 폭넓은 의견을 청취
 - 공청회 결과는 이후 위원회 심의과정에 유용한 참고자료로 제공
- 공개적이고 투명한 업무 프로세스 구축
 - 공개적인 토론과정을 통한 양형기준 설정과정에서의 투명성 확보
 - 종국적으로 양형기준에 대한 대외적 신뢰 확보

2. 개최 근거

- 위원회가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공청회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한 양형위원회규칙 제11조에 근거하여 공청회 개최
- 양형위원회 운영규정 제16조 제1항 제3호에 의하면 양형기준안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공청회를 개최하도록 규정

III. 공청회 일시·장소

1. 일시

- 제5차 공청회 : 2012. 3. 12.(월) 14:00 ~ 17:30
- 제6차 공청회 : 2012. 3. 26.(월) 14:00 ~ 17:30
- ※ 향후 일정
 - 양형기준안에 대한 관계기관 의견조회(2012. 2.)
 - 의견조회 결과와 공청회 결과를 토대로 전문위원단 논의를 거쳐 양형

기준안 수정 (2012. 4. 중순)

- 양형기준 수정안을 기초로 양형기준 효과분석(2012. 4. 하순)
- 양형기준안 최종 의결(2012. 5.경)

2. 장소

- 제5차 공청회 : 한국거래소(KRX) 1층 국제회의장
- 제6차 공청회 : 미정

IV. 공청회 참석자

1. 진행 관련

- 인사 말씀 : 양형위원회 위원장
- 공청회 사회 : 상임위원
- 개회식 진행 : 운영지원단장

2. 양형기준안 발표자

- 수석전문위원
 - 양형기준안 작성 실무를 담당한 전문위원단을 대표하여 수석전문위원이 양형기준안에 대한 소개를 담당
 - 전문위원 연구성과를 토대로 공청회가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기준안의 내용과 의미를 설명

3. 지평토론자

- 양형기준안 논의 과정에서 법원과 검찰의 의견은 충분히 반영된

점을 감안하여 양형에 관한 관심과 식견을 갖춘 유관기관 간부, 변호사, 교수,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인사 각 1인씩으로 구성

- 양형기준안에 대한 실질적인 논의가 가능하도록 공청회 대상범죄를 각각 2개 범죄로 줄이고, 충분한 토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정토론자를 공청회마다 4인씩으로 구성

V. 공청회 진행(안)

1. 진행 순서

시 간	행사 내용	비 고
14:00 - 14:05	개회식	운영지원단장
14:05 - 14:10	인사말씀	양형위원회 위원장
14:20 - 14:40	제1범죄 양형기준안 설명	수석전문위원
14:40 - 15:30	지정토론 및 답변	지정토론자 및 전문위원
15:30 - 15:40	방청객 질의 및 답변	
15:40 - 16:00	휴식	
16:00 - 16:20	제2범죄 양형기준안 설명	수석전문위원
16:20 - 17:10	지정토론 및 답변	지정토론자 및 전문위원
17:10 - 17:20	방청객 질의 및 답변	
17:20 - 17:30	마무리 및 폐회	운영지원단장

2. 토론 주제

가. 대상 기준안

- 제5차 공청회 : 2012. 1. 30. 위원회 제39차 회의에서 의결된 **증권·금융범죄, 지식재산권범죄** 양형기준안
- 제6차 공청회 : 2012. 1. 30. 위원회 제39차 회의에서 의결된 **폭력범죄, 교통범죄** 양형기준안

나. 토론 쟁점

- 개별 양형기준안의 유형분류 또는 형량범위의 적정성
- 구체적 양형과정에서 고려 또는 배제해야 할 양형인자
- 기타 양형기준 설정 시 참고할 사항

3. 발표 및 토론 방식

- 양형기준안 발표 및 지정토론자 토론
공청회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양형기준안 발표자가 준비된 기준안을 소개한 후에 지정토론자의 토론 진행
- 방청객 질의
방청객이 손을 들고 일어나 자유롭게 의견진술 또는 질문하고 지정토론자 및 전문위원이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

4. 기타 사항

- 공청회에서의 발표 및 의견진술 내용은 공청회 주제와 직접 관련된 내용에 한정
- 공청회 주재자는 공청회 주제에서 벗어나는 발표 내용을 제한할

수 있고, 그밖에 질서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음

VI. 공청회 결과 보고

- 운영지원단은 공청회 종료 후 신속히 공청회 결과를 정리하여 위원회 제40차 회의에 보고
 - 양형기준안 수정을 위한 심의과정에 필요한 기초자료로 제공
- 보고 내용
 - 행사 개요
 - 양형기준안 발표문
 - 지정토론문
 - 방청객 질의 내용 등

VII. 준비사항 및 홍보 방안

1. 준비사항

- 지정토론자 선정 및 확정
- 행사장 준비
- 자료집 발간 및 배부
- 행사 시나리오 및 체크리스트 작성

2. 홍보 방안

- 관련 기관 및 대학 등에 포스터, 안내문, 초청장 등 발송
- 현수막 설치
- 신문광고
- 보도자료 배포

- 양형위원회 홈페이지(<http://sc.scourt.go.kr>) 등에 공청회 개최 안내문 게시